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방연구개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며, 체계적인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4급 1명, 5급 2명)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

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0. ~ 7.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국방혁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국방혁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 소관 업무 종합·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추진
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이행
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방혁신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
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미나 기획·추진 및 결과 관리
8. 국 인사, 예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 정책 총괄·조정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변경
3. 5년 단위 국방혁신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5. 국방혁신과제 추진실적 분석·평가
6. 대통령·국회에 국방혁신 추진 실적·계획 보고
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방비전서 작성에 관한 업무
9. 군 경계시스템 무인화·고도화 추진 및 조정·통제

제9조제8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호에 명시된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 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조정

제9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 중 “서남아시아국가”를 각각 “서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독립국가연합”을 각각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으로 한다.

9. 군사외교와 관련한 외국 주요 인사의 경호·의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1항제2호 중 “군종장교의”를 “군종장교”로, “보수 교육”을 “보

수교육 시행·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격 지도”를 “인성함양 교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군종영화의”를 “군종 영상”으로, “운영”을 “송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활동”을 “활동·지원”으로 한다.

6. 군종간행물 및 군종콘텐츠 제작·보급

제11조의 제목 “(전력자원관리실)”을 “(자원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자원관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을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군수지능화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과·국유재산과·군주거정책과·환경소음팀·전력정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며, 군수기획과장·물자관리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설과장·국유재산과장·군주거정책과장·전력정책과장·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을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군수지능화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

관리과 · 부대건설과 · 국유재산과 · 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 · 물자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시설기획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 건설관리과장 · 부대건설과장 · 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수립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 · 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며, 전력정책과장 ·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군사력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5.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및 통제
6.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사항

④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자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⑤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
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분석평가 제도 발전

제1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첨단전력기획관)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0조의5(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

다.

제20조의6(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의7(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676”을 “678”로 하고, 일반직 계 “668”를 “670”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4”를 “215”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를 “16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8”을 “6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67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를 “217”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를 “16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2항 및 제20조의7제2항 관련)

1. 군공향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월 30일)

총계	15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준속기한: 2025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4. 국방연구개발총괄과(준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5. 유무인복합체계과(준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2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 중동아프리카정책과(준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 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u> <u>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u> <u>보한다.</u> <u>②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국방혁</u> <u>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u> <u>각 1명을 두되, 국방혁신담당관</u> <u>및 군구조혁신담당관은 영관급</u> <u>장교로 보한다.</u> <u>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u> <u>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u> <u>좌한다.</u> <u>1. 국 소관 업무 종합·조정 및</u> <u>사업계획 관리·추진</u> <u>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개</u> <u>정에 관한 사항</u> <u>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이</u> <u>행</u> <u>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u> <u>관한 사항</u> <u>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u> <u>영에 관한 사항</u> <u>6. 국방혁신 대내·외 교육과정</u> <u>운영</u> <u>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u>

미나 기획·추진 및 결과 관리

8. 국 인사, 예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 정책 총괄·조정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변경

3. 5년 단위 국방혁신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5. 국방혁신과제 추진실적 분석·평가

6. 대통령·국회에 국방혁신 추진 실적·계획 보고

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방비전서 작성에 관한 업무

9. 군 경계시스템 무인화·고도화 추진 및 조정·통제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⑦ (생략)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9. · 10. (생략)

⑨ ~ ⑫ (생략)

⑬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 · 일 · 중 · 러 · 독립국가연합 · 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4. 미 · 일 · 중 · 러 · 독립국가연합 · 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를 제외한 국가 간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 협의, 협의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5. ~ 8.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7호에 명시된 연구기관
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 · 조정

9. · 10.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서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4. -----
----- 서남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
가-----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생 략)

⑮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조정

2.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3.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통제

6. 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

9. 군사외교와 관련한 외국 주요 인사의 경호·의전에 관한 사항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

2. -----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3. -----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

4. -----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5. -----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6. -----
--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

7. ----- 독립국가연합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 정 ⑩ ~ ⑪ (생 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⑩ (생 략) ⑪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군종장교의</u> 양성 및 <u>보수 교 육</u> 3. (생 략) 4. 군인과 군무원의 <u>인격 지도</u> 5. <u>군종영화의</u>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u>운영</u> 6. <u>군종도서 및 명상자료 제작 · 보급</u> 7. (생 략)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u>활동</u> ⑫ ~ ⑬ (생 략) 제11조(<u>전력자원관리실</u>) ① <u>전력 자원관리실장</u>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	(<u>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u>) -- -----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⑩ (현 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u>군종장교</u> ----- <u>보수교육 시행 · 지원</u> 3. (현행과 같음) 4. ----- <u>인성함양 교 육 · 지원</u> 5. <u>군종 영상</u> ----- ----- <u>송출 지원</u> 6. <u>군종간행물 및 군종콘텐츠 제작 · 보급</u> 7. (현행과 같음) 8. ----- <u>활동 · 지원</u> ⑫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u>자원관리실</u>) ① <u>자원관리 실장</u>----- ----- -----
---	---

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전력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

-----.

② -----
----- 자원관리실장 -----
----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

----- 한
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관리

분장한다.

1. ~ 6. (생략)

7.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8. ~ 12의2. (생략)

⑩ · ⑪ (생략)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⑬ ~ ⑲ (생략)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
립·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대외
협력 업무 및 국방과학기술진
흥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2의2.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
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수립

⑬ ~ ⑲ (현행과 같음)

<삭제>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6.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
정의 편성·운영 및 통제

7.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
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8. 삭제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
조

2.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의 전시에산 편성
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
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정찰전력, 지휘·통제·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
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정찰전력, 지휘·통제·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 ·
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 · 정찰전력, 지휘 · 통제 ·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
무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 · 정찰전력, 지휘 · 통제 ·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
획 수립 · 결과 판정 및 분석
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 · 정찰전력, 지휘 · 통제 ·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
· 시험평가 · 분석평가 제도
발전

<신 설>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① 전력정
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
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며, 전력정책과장·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군사력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5.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통제
6.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④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동·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
전력) 사업의 전시에산 편성
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
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⑤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정찰전력, 지휘·통제·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
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정찰전력, 지휘·통제·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
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시·정찰전력, 지휘·통제·
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
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
무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u>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u> 5. <u>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u> 6. <u>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정찰전력, 지휘·통제·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에산 편성에 관한 업무</u> 7. <u>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분석평가 제도 발전</u>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 ----- ----- ----- ----- ----- --. ----- -----
---	--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19조(국방개혁실) ① 국방개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방개혁실장 밑에 군구조개혁담당관·미래국방기획담당관·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국방

----- 10

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혁신기술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미래국방
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국
방운영개혁담당관 및 국방혁신
기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군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의 수립·시행

4.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5.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
석·평가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의 운영

7. 대내외 개혁업무 협조

8.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
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9. 삭제

10. 실 소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추진

11.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12.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3.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14.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15.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16.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미래국방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미래국방비전 수립 및 미래 전략 발전 분야 총괄·조정

2. 미래국방비전 및 미래 전략 발전 분야 연구·기획

3. 미래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 총괄·조정

4. 미래 군구조(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 개혁 분야 연구·기획

⑥ 삭제

⑦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2.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3.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
력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 ·

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5.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
력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
진실적 분석 · 평가

6.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
력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⑧ 국방혁신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1.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
업 추진 총괄 · 조정

2. 스마트 국방혁신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
업에 대한 추진 점검

4. 국방 무인체계 발전에 필요
한 혁신분야 총괄 · 조정

5. 국방 신기술 적용 소요에 대
한 연구

⑨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의4(첨단전력기획관) 첨단
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
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0조의5(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
과 같다.

제20조의6(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의7(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
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 과 같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6</u>	<u>678</u>	+2
·	·	·	
·	·	·	
일반직 계	<u>668</u>	<u>670</u>	+2
·	·	·	
·	·	·	
·	·	·	
<u>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u> <u>방호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u> <u>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u> <u>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u> <u>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u> <u>· 방송통신사무관 또는</u> <u>기록연구관</u>	<u>214</u>	<u>215</u>	+1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u> <u>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u> <u>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u> <u>· 항공주사 · 시설주사 ·</u> <u>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u>	<u>163</u>	<u>164</u>	+1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 록연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8</u>	<u>680</u>	+2
·	·	·	
·	·	·	
일반직 계	<u>670</u>	<u>672</u>	+2
·	·	·	
·	·	·	
·	·	·	
<u>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u>			
<u>방호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u>			
<u>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u>			
<u>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u>			
<u>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u>			
<u>· 방송통신사무관 또는</u>			
<u>기록연구관</u>	<u>216</u>	<u>217</u>	+1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u>			
<u>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u>			
<u>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u>			
<u>· 항공주사 · 시설주사 ·</u>			
<u>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u>			
<u>·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u>			
<u>록연구사</u>	<u>163</u>	<u>164</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